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농 어 촌 주 민 의 보 건 복 지 증 진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
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3. 주요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안 제6조)
- 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시 특례 규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를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로, “기준점수”를 “기준액”으로, “기준점수”를 “기준액”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 이상이면서”를 “월별 보험료액이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로, “기준점수”를 “기준액”으로, “기준점수”를 “기준액”이”로,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을 “월별 보험료액이 정액지원 기준액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월별 보험료액이 지원제외 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점수는”을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으로, “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부과점수별”을 “보험료액 및 보험료액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1. -----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 ----- ----- 기 준액----- -- 기준액”이----- ----- -----
2.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월별 보험료액이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 ----- -- 기준액----- ----- 기준액”이----- ----- 월별 보험료액 이 정액지원 기준액인 ----- ----- -----

3. <u>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u>: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u>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점수는</u>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u>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u>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제7조(<u>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u>)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u>보험료부과점수</u>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3. <u>월별 보험료액이 지원제외 기준액</u> ----- ----- ----- ② ----- -- <u>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u> ----- <u>보험료액 및 보험료액별</u> ----- ----- ----- ----- -----. 제7조(<u>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015